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김 승 수 의원)

의 안 변 호	23-7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3. 6. .

발의자: 김승수, 강동오, 권영숙, 권인순,
고병준, 남해석, 백남환, 신종갑,
안미자, 오욱자, 채우진, 최은하,
홍지광

1. 제정이유

외부를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시각 기능과 의사소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인의 행복추구권 향상에 이바지하고, 나아가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책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구민의 책무(안 제4조)
- 다.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(안 제6조)

다.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, 자립생활, 자조모임 운영, 전문인력 양성, 인식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추진(안 제7조)

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가. 장애인복지법 제22조(정보에의 접근), 제31조(실태조사), 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5. 18. ~ 5. 23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시청각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민의 책무) 모든 구민은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·

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
2. 시청각장애인의 유형,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
3.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
4. 대상자 발굴·연계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5.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6.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·제도의 개선
7.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1조 및 다른 법령·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 한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

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
 2. 자립생활 교육·훈련, 직업재활
 3. 자조모임 운영·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
 4. 심리상담, 문화·여가 활동 참여
 5.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·양성 및 파견
 6.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·개발·보급
 7.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
 8.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구청장은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,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22. 12. 22.] [법률 제18625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, 그 밖의 교육·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(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2. 19.>

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(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

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, 음성도서,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 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·보급하고,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·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1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,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·의사소통·보행·이동 훈련, 심리상담, 문화·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·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6조 실태조사

제7조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성운정
연 락 처	02-3153-8882